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|      |
|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| 2210 |
|------|------|

제출일자 : 2022. 9. 6.
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## 1. 제안이유

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요건을 명확히 하고, 다른 조례에 의한 보훈관련 수당 수급자에게도 우리구 수당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국가보훈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함(안 제3조)
- 나. 보훈예우수당 지급 1년 이상 거주조건 삭제(안 제8조제1항)
- 다. 보훈예우수당 중복지원 금지 규정 삭제(안 제8조제3항)
- 라.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및 신청기간 변경(안 제9조제1항, 제3항)
- 마.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목적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 규정 삭제(안 제11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5조, 제18조, 제19조, 제20조
- 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, 제13조

나. 예산조치: 예산팀과 협의

다. 합의기관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2022. 8. 5. ~ 2022. 8. 25. 결과: 의견 반영
- 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첨부
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첨부
- 4) 규제사전심사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- 5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- 6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(가족정책과)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단체(이하 “단체”라 한다)”를 “주소를 두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(이하 “단체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
2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
3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
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
5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

6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

제6조 중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”을 “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”을 “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”로, “두고 1년 이상 거주한”을 “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“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·공헌자가 사망한 경우”를 “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지급기준일”을 “신청일”로, “두고 거주하는”을 “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사망사실을 인지한 날”을 “사망일로”로 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에 따른<br/> <u>예우 및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<br/>                     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<br/>                     훈단체(이하 “단체”라 한다)로<br/>                     한다.</u>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| <p>제3조(적용대상) -----<br/>                     ----- 주소<br/>                     를 두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<br/>                     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<br/>                     및 보훈단체(이하 “단체”라 한<br/>                     다)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<br/>                         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가<br/>                        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<br/>                        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<br/>                         또는 단체</li> <li>2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<br/>                         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<br/>                         는 단체</li> <li>3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<br/>                         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<br/>                         받는 사람 또는 단체</li> <li>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<br/>                        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<br/>                         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<br/>                         는 단체</li> <li>5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<br/>                         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<br/>                         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</li> </ol> |



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「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④·⑤ (생략)

<신설>

제9조(사망위로금 지급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·공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사망위로금은 유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11조(중복지원 금지)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⑥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.

제9조(사망위로금 지급)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신청일 -----  
----- 둔 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사망일로 -----  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# 비용추계서

(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## 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: 금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서울시 보훈수당과 중복 지급
2. 비용추계의 전제 :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수 약1,400명 증가, 지급금액 5만원일 경우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천원)

| 연도          |         | 1차년도      | 2차년도      | 3차년도      | 4차년도      | 5차년도      | 합계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
| 구분<br>세입    | ○ 시비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○ 구비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소계(a)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
| 구분<br>세출    | ○ 일반보상금 | 840,000   | 840,000   | 840,000   | 840,000   | 840,000   | 4,200,000   |
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소계(b)   | 840,000   | 840,000   | 840,000   | 840,000   | 840,000   | 4,200,000   |
| □ 총 비용(a-b) |         | - 840,000 | - 840,000 | - 840,000 | - 840,000 | - 840,000 | - 4,200,000 |

4. 재원조달방안 (단위 : 천원)

| 연도 |       | 1차년도    | 2차년도    | 3차년도    | 4차년도    | 5차년도    | 합계        |
|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구분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
| 국비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0         |
| 시비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0         |
| 구비 | 자체재원  | 840,000 | 840,000 | 840,000 | 840,000 | 840,000 | 4,200,000 |
|    | 의존재원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  |
|    | 지방채 등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  |
| 합계 |       | 840,000 | 840,000 | 840,000 | 840,000 | 840,000 | 4,200,000 |

5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6. 작성자 : 복지정책과 행정7급 이교육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(2023년 기준)

- 일반보상금(840,000천원)
  - 1차년도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증가 1,400명 × 50,000원 × 12개월(1~12월)

# 현행조례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3.10.31>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17.7.17>

1. “희생·공헌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개정 2013.10.31>

가.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<개정 2013.10.31>

나.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

다.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<개정 2013.10.31>

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

2. “국가보훈대상자”란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<개정 2013.10.31>

3. “국가보훈관계법령”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계된 법령을 말한다.<개정 2013.10.31, 2017.7.17>

4. “보훈단체”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.<신설 2013.10.31>

**제2조의2(책무)**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는 희생·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[조 신설 2013.10.31]<개정 2017.7.17>

**제3조(적용대상)**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단체(이하 “단체”라 한다)로 한다.<개정 2013.10.31>

**제4조(공훈선양사업)**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개정 2019.10.10>

1.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
2. 국경일·기념일 등 중요 행사시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 예우
3.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안행사 및 위문·격려<개정 2019.10.10>
4. 보훈행사시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
5.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지원<신설 2019.10.10>

[제목개정 2019.10.10]

제4조의2 [ 종전 제4조의2는 제9조로 이동 <2019.10.10>]

제4조의3 [ 종전 제4조의3은 제8조로 이동 <2019.10.10>]

제5조 삭제 <2019.10.10>

**제6조(예산지원)**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19.10.10>

1.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회관 등 시설의 운영<신설 2019.10.10>
2. 희생·공헌자 추모 또는 기념 사업<개정 2013.10.31>
3. 호국·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
4.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
5.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
6.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
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개정 2013.10.31, 2019.10.10>

[제목개정 2019.10.10]

**제7조(지원신청 및 보고)** ① 제6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10.31>

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은 단체의 장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10.31, 2014.12.30.>

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<신설 2013.10.31><개정 2014.12.30.>

**제8조(보훈예우수당의 지급)**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9.10.10>

②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되거나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<신설 2019.10.10>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월의 다음 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단한다.<신설 2019.10.10>

1.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
2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<신설 2019.10.10>

1.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지급된 경우

2.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등 지급대상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

3.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[본조신설 2018.2.27]

[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<2019.10.10>]

**제9조(사망위로금 지급)**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·공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.<개정 2017.7.17>

② 사망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한다.<개정 2017.7.17>

③ 사망위로금은 유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7.17>

④ 위로금을 지급받을 순위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[본조신설 2013.10.31]

**제10조(위문금 지급)**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문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[본조신설 2019.10.10]

**제11조(중복지원 금지)**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.<개정 2018. 2.27>

[본조신설 2013.10.31]

부칙 (제557호, 2008.12.24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복지원 금지)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

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.

부칙 (제762호, 2013.10.31)

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제79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, 2014.12.30.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5호는 2016회 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

제2조(다른 조례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금천구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(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645호, (일부개정)2011.01.01) 는 폐지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(생략)

②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서울특별시금천구보조금관리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③부터 ④까지 생략

제4조 (생략)

부칙 (제926호, 2017.7.17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제961호, 2018.2.27)

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제1056호, 2019.10.10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훈예우수당 지급중단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당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.

# 관계법령

## 국가보훈 기본법

**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예우 및 지원의 원칙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.

**제19조(예우 및 지원)**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)**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신청 대상자"라 한다)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1.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·공헌자의 경우
2.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
3.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

##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**제2조(예우의 기본이념)** 대한민국의 오늘을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(戰歿軍警)과 전상군경(戰傷軍警)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(龜鑑)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,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(榮譽)로운 생활이 유지·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.

**제3조(정부의 시책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·발전시키며,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.

**제13조(보상금 지급순위)**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

1.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,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.
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

1. 사망한 경우

2.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3.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